

무배당 하나개인퇴직계좌  
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(개인형)  
약관

## 무배당 하나개인퇴직계좌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약관(개인형)

- 제 1 조 【목적】
- 제 2 조 【용어의 정의】
- 제 3 조 【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】
- 제 4 조 【보험수익자(보험금을 받는 자)의 지정】
- 제 5 조 【운용관리기관의 수행업무】
- 제 6 조 【자산관리기관의 수행업무】
- 제 7 조 【계약의 성립】
- 제 8 조 【보험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】
- 제 9 조 【보험세목의 선택 및 변경】
- 제 10 조 【계약의 해지 및 이전】
- 제 11 조 【양도 및 담보의 제공】
- 제 12 조 【중도인출에 관한 사항】
- 제 13 조 【부담금의 종류】
- 제 14 조 【부담금의 납입】
- 제 15 조 【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】
- 제 16 조 【배당금의 지급】
- 제 17 조 【소멸시효】
- 제 18 조 【해지시 구비서류】
- 제 19 조 【금리연동형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】
- 제 20 조 【금리연동형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】
- 제 21 조 【이율보증형의 단위보험】
- 제 22 조 【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】
- 제 23 조 【이율보증형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】
- 제 24 조 【실적배당형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】
- 제 25 조 【실적배당형 펀드의 운용 및 평가】
- 제 26 조 【실적배당형 적립금에 대한 계산】
- 제 27 조 【실적배당형 펀드의 유형】
- 제 28 조 【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펀드 선택 및 변경】
- 제 29 조 【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】
- 제 30 조 【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방법 및 운용】
- 제 31 조 【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】
- 제 32 조 【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】
- 제 33 조 【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폐지】
- 제 34 조 【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】
- 제 35 조 【분쟁의 조정】
- 제 36 조 【관할법원】
- 제 37 조 【약관의 해석】
- 제 38 조 【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】
- 제 39 조 【회사의 손해배상책임】
- 제 40 조 【준거법】
- 제 41 조 【약관의 변경】
- 제 42 조 【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】

## 제 1 조 【목적】

이 약관의 목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(이하 “법”이라 합니다) 제 25 조에 기초한 개인퇴직계좌(이하 “개인퇴직계좌”라 합니다)에 가입한 보험계약자(이하 “계약자”라 합니다)와 퇴직연금사업자인 하나 HSBC 생명보험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합니다)가 법 제 16 조에서 정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(이하 “이 계약”이라 합니다)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.

## 제 2 조 【용어의 정의】

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“가입자”라 함은 퇴직일시금을 수령하고 퇴직연금사업자에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로 장래에 개인퇴직계좌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.
2. “운용관리기관”이라 함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계약자와 법 제 15 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.
3. “자산관리기관”이라 함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계약자와 법 제 16 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.
4. “급여”라 함은 개인퇴직계좌로부터 가입자가 55 세 이상인 경우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합니다.

② 제 1 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(이하 “시행령”, “시행규칙”이라 합니다)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.

## 제 3 조 【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】

이 계약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는 가입자로 합니다.

## 제 4 조 【보험수익자(보험금을 받는 자)의 지정】

이 계약의 보험수익자(보험금을 받는 자)는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로 합니다. 그러나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상속인으로 합니다.

## 제 5 조 【운용관리기관의 수행업무】

①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는 다음 각 호의 통지 또는 지시(이하 “통지”이라 합니다)는 관련 법규 및 계약자와 운용관리기관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운용관리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것입니다. 따라서 계약자가 회사에 대해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.

1.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운용지시
2. 급여의 지급지시
3. 세금 등 기타비용에 관한 사항의 통지
4. 이전에 따른 가입자의 적립금 이전지시
5.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운용관리기관이 수행하도록 정해진 업무

② 제 1 항에서의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회사에게 계약목적상 부적절 혹은 법령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, 회사는 그 통지 등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 회사는 통지 등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

## 제 6 조 【자산관리기관의 수행업무】

① 회사는 자산관리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.

1. 계좌의 설정 및 관리
2. 부담금의 수령
3.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
4.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하는 적립금의 운용지시의 이행
5. 급여 등의 지급
6.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자산관리기관이 수행하도록 정해진 업무

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 등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나 보험수익자(보험금을 받는 자)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
## 제 7 조 【계약의 성립】

-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(講約)과 회사의 승낙(承諾)으로 이루어집니다.
-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지체없이 보험증권(보험가입증서)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.

**제 8 조 【보험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】**

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약관(이하 “약관”이라 합니다)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(청약서 부분)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. 다만, 통신 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(청약서 부분)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(청약서 부분)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,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(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)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.

**제 9 조 【보험세목의 선택 및 변경】**

- ①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는 계약 체결시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세목(이하 “보험세목”이라 합니다)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, 복수로 선택한 경우 부담금에 대하여 보험세목별 편입비율을 설정해야 합니다.
- ②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는 보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보험세목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.
- ③ 제 2 항에 의한 보험세목 변경시 보험세목간 적립금 이전은 각 보험세목의 해약환급금 지급 및 부담금 납입 절차를 따릅니다.

**제 10 조 【계약의 해지 및 이전】**

-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개인퇴직계좌의 폐지·종단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제 4 조(보험수익자(보험금을 받는 자)의 지정)에서 정한 보험수익자(보험금을 받는 자)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.
- ② 계약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자산관리기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해지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하여 드립니다.

**제 11 조 【양도 및 담보의 제공】**

이 계약의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는 개인퇴직계좌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다음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를 통해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- 1. 무주택자인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
- 2.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의 요양을 하는 경우
- 3. 그 밖에 천재·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

**제 12 조 【중도인출에 관한 사항】**

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는 제 11 조(양도 및 담보의 제공)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용관리기관의 통지를 통해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.

**제 13 조 【부담금의 종류】**

이 계약에서 부담금이란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액 중 이 계약을 위하여 납입하는 금액으로 합니다.

**제 14 조 【부담금의 납입】**

-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 회 부담금을 받은 때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.
- ② 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.
- ③ 실적배당형의 경우 납입된 부담금은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운용지시를 회사가 접수한 날부터 1 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펀드에 투입되며, 투입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금리연동형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드립니다.

**제 15 조 【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】**

회사는 금리연동형, 이율보증형 및 실적배당형 펀드 유형별로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부담금 및 적립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.

#### 제 16 조 【배당금의 지급】

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.

#### 제 17 조 【소멸시효】

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급여 청구권, 부담금 또는 해지환급금 반환청구권 등은 3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.

#### 제 18 조 【해지시 구비서류】

제 10 조(계약의 해지 및 이전)에 의한 해지시에는 해지 청구서(회사양식)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**제 19 조~제 20 조는 금리연동형에 관한 사항으로 금리연동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**

#### 제 19 조 【금리연동형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】

- ① 금리연동형 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회사가 정한 금리연동형 공시이율로 합니다.
- ② 제 1 항의 금리연동형 공시이율은 회사의 금리연동형 특별계정 운용자산이익률, 지표금리,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.
- ③ 회사는 제 1 항 내지 제 2 항에서 정한 금리연동형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.

#### 제 20 조 【금리연동형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】

- ① 회사는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제 4 조(보험수익자(보험금을 받는 자)의 지정)에서 정한 보험수익자(보험금을 받는 자)에게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. 단, 다른 자산관리기관 이전으로 인한 해지환급금은 보험수익자(보험금을 받는 자)에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.
- ② 제 1 항의 경우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회사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,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급여를 보험수익자(보험금을 받는 자)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.
- ③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5 영업일 이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. 이 경우 해지환급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.
- ④ 회사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에게 알리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리연동형 공시이율+1%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.
- ⑤ 계약일로부터 1 년 미만의 기간에 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에서 조기이전 수수료를 차감합니다. 다만, 금리연동형은 동일 자산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기이전수수료를 적용하며, 동일자산관리기관으로의 이전일지라도 계약일부터 1 개월 미만의 이전 또는 오토 스위칭(보험료 분산투입, 펀드자동재배분 등)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.

**제 21 조~제 23 조는 이율보증형에 관한 사항으로 이율보증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**

#### 제 21 조 【이율보증형의 단위보험】

- ① 이 계약에서 “단위보험”이라 함은 회사가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부담금 별로 설정되는 것으로 하며,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“이율보증기간”이라 합니다.

②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는 부담금 납입시 회사의 협정서에서 정한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의 보증기간 중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의 보증기간을 설정하며,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이 속하는 달에 회사가 공시한 이율보증형 공시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이 계약의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.

③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제 2항을 준용합니다.

④ 제 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하며,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이 속한 달에 회사가 공시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.

⑤ 제 2항 및 제 3항에도 불구하고 단위보험은 이율보증기간 만기일에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 나이가 연금 규약에서 정한 정년퇴직에 의한 급여지급이 발생하는 나이(이하 “정년나이”라 합니다)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이 가능하며, 제 4항에 의한 단위보험 자동설정시에는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의 나이가 정년나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율보증기간이 가장 긴 단위보험으로 자동설정합니다. 단,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에 정년나이까지의 기간이 최단기 이율보증기간보다 짧고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금리연동형으로 보험세목을 변경하여 드립니다.

## 제 22 조 【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】

① 이율보증형의 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공시이율로 합니다.

② 제 1항의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은 지표금리,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.

③ 회사는 제 1항 내지 제 2항에서 정한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.

## 제 23 조 【이율보증형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】

① 회사는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제 4조(보험수익자(보험금을 받는 자)의 지정)에서 정한 보험수익자(보험금을 받는 자)에게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. 단, 다른 자산관리기관 이전으로 인한 해지환급금은 보험수익자(보험금을 받는 자)에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.

② 제 1항의 경우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회사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,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급여를 보험수익자(보험금을 받는 자)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.

③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. 이 경우 해지환급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.

④ 회사는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에게 알리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율보증형 공시이율+1%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.

⑤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시장가격조정률(<별표 1> 참조)이 적용된 금액이며,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에 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에서 조기이전수수료를 차감합니다.

**제 24 조~제 33 조는 실적배당형에 관한 사항으로 실적배당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**

## 제 24 조 【실적배당형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】

① 회사는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제 4조(보험수익자(보험금을 받는 자)의 지정)에서 정한 보험수익자(보험금을 받는 자)에게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. 단, 다른 자산관리기관 이전으로 인한 해지환급금은 보험수익자(보험금을 받는 자)에게

지급하지 아니합니다.

② 제 1 항의 경우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회사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,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급여를 보험수익자(보험금을 받는 자)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.

③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부터 3 영업일의 기준가를 반영하여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5 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. 이 경우 해지환급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.

④ 회사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에게 알리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리연동형 공시이율+1%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.

⑤ 계약일로부터 1 년 미만의 기간에 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에서 조기기전 수수료를 차감합니다.

### 제 25 조 【실적배당형 펀드의 운용 및 평가】

① 실적배당형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독립적으로 운용되며, 자산운용실적이 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.

② 제 1 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의한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해당 특별계정별로 귀속됩니다.

③ 계약자는 제 28 조(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펀드 선택 및 변경)의 규정에 따라 제 27 조(실적배당형 펀드의 유형)의 규정에 의한 펀드를 변경할 수 있으나, 각 펀드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.

### 제 26 조 【실적배당형 적립금에 대한 계산】

① 실적배당형 적립금의 계산은 적립금과 부담금에 대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.

② 회사는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매일 수수료(자산관리수수료, 상품관리수수료, 특별계정운용보수, 특별계정수탁보수)를 차감합니다.

### 제 27 조 【실적배당형 펀드의 유형】

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구체적인 펀드 유형 및 내용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
1. 채권형 : 국내 투자적격채권[주식관련사채(전환사채, 교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 등) 및 자산유동화증권]을 포함, 채권관련파생상품 및 채권형 수익증권에 펀드순자산(NAV)의 90% 이상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,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. 단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순자산의 10% 이하에서 운영합니다.
2. 혼합형 : 주식(코스닥주식 등 포함), 주식관련파생상품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펀드순자산의 40% 이하로 투자하고, 국내 투자적격채권[주식관련사채(전환사채, 교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 등) 및 자산유동화증권]을 포함, 채권관련파생상품 및 채권형 수익증권과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60% 이상 투자하는 펀드입니다. 단 주식관련 파생상품과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순자산의 10% 이하에서 운영합니다.
3. 인덱스혼합형 : 주식(코스닥주식 등 포함), 주식관련파생상품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펀드순자산의 40% 이하로 투자하고, 국내 투자적격채권[주식관련사채(전환사채, 교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 등) 및 자산유동화증권]을 포함, 채권관련파생상품 및 채권형 수익증권과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60% 이상 투자하는 펀드입니다. 상기의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한국주가지수 200(KOSPI200) 등을 목표지수로 하여 인덱스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합니다. 단 주식관련 파생상품과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순자산의 10% 이하에서 운영합니다.

② 제 1 항에서 운용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

③ 상기 투자 대상은 보험업법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## 제 28 조 【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펀드 선택 및 변경】

- ①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는 계약 체결시 운용관리기관에서 제시한 제 27 조(실적배당형 펀드의 유형)에 정한 펀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, 복수로 선택한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해야 합니다.
- ② 부담금은 제 1 항에서 설정한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됩니다.
- ③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회사에 서면 또는 운용관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사이버 창구로 펀드의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도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정한 바에 따라 변경됩니다.
- ④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제 3 항에 의한 펀드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 33 조 (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폐지)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, 이 경우 “변경요구일+5영업일”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.
- ⑤ 회사는 천재·지변, 유가증권시장의 폐쇄·휴장,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 4 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펀드의 자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.

## 제 29 조 【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】

- ①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는 부담금의 펀드별 편입비율과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편입비율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적립금은 펀드자동재배분 지정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펀드자동재배분 지정시 선택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 재배분됩니다.
- ② 보험기간 중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펀드의 편입비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 편입비율에 따라 자동 재배분되며, 이 경우 변경된 펀드자동재배분 지정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배분됩니다.
- ③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는 보험기간 중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④ 펀드자동재배분은 펀드자동재배분 지정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실행되며,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됩니다.
- ⑤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한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펀드 변경요구는 펀드자동재배분 실행 예정일 직전 5영업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.

## 제 30 조 【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방법 및 운용】

- ①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며, 시가법은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.
- ②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, 보험업감독규정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그 관계법률이 제·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## 제 31 조 【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】

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.

### 1. 좌수

특별계정 설정시 1 원을 1 좌로 하며,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.

### 2. 좌당 기준가격

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며, 1,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고,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,000 좌당 1,000 원으로 합니다.

$$\text{좌당 기준가격} = \frac{\text{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}}{\text{특별계정 총 좌수}}$$

단,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 자산에서 수수료(자산관리수수료, 상품관리수수료, 특별계정운용보수, 특별계정수탁보수)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.

## 제 32 조 【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】

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88 조에 의한 보수,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 265 조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및 채권평가비용 등을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합니다. 다만,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·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.



### 제 33 조 【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폐지】

-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.
1.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,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
  2. 당해 각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
  3. 기타 제 1 호 내지 제 2 호에 준하는 경우
- ② 회사는 제 1 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계약자에게 폐지사유, 폐지일까지의 적립금과 함께 제 28 조(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펀드 선택 및 변경)에 따른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. 다만, 계약자가 펀드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.
- ③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연간 펀드 변경 회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.

### 제 34 조 【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】

급여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는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
### 제 35 조 【분쟁의 조정】

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## 제 36 조 【관할법원】

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(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)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. 다만, 회사와 계약자가 협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.

### 제 37 조 【약관의 해석】

-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.
-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.
-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.

### 제 38 조 【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】

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제작의 보험안내자료(계약의 청약에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)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.

### 제 39 조 【회사의 손해배상책임】

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,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.

### 제 40 조 【준거법】

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.

### 제 41 조 【약관의 변경】

이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, 계약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
### 제 42 조 【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】

금리연동형, 이율보증형의 경우에는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.

(별표 1)

### 시장가격조정률

1. 이율보증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장가격조정률(MVA: Market Value Adjustment)을 적용합니다.

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적립금에 (1-시장가격조정률)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합니다.

2. 시장가격조정률(MVA)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.

$$MVA = 1 - \left( \frac{1 + i_j}{1 + i_k} \right)^{n + \frac{m}{\eta}}$$

- (1) MVA의 최대한도는 5%로 합니다.
- (2)  $i_j > i_k$ 인 경우 또는 급여의 지급인 경우에는 MVA=0으로 합니다.

- 잔여보증기간 : 단위보험 해지일부터 단위보험 이율보증기간 말일까지 기간
- $n$  : 잔여보증기간의 연단위기간
- $\eta$  : 잔여보증기간의 연미만 일단위기간
- $\eta$  : 365 또는 366
- $i_j$  : j 번째 설정된 단위보험에 적용되는 이율보증형 공시이율
- $i_k$  : 잔여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이율보증형 공시이율(소수점 4째자리에서 반올림)  
 $i_k = i_{k-1} + (i_{k+1} - i_{k-1}) \times \frac{m}{12 \times n}$  (소수점 4째자리에서 반올림)
- $i_{k-1}$  : 해지일이 속한 달에 회사에서 공시한 잔여보증기간보다 작거나 같은 공시이율  
 별 보증기간중 가장 가까운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공시이율. 단, 잔여보증기간이 공시되는 이율보증기간 중 최단기이율보증기간보다 작은 경우  $i_{k-1}$ 은  $i_{k+1}$ 로 하며  $i_{k-1}$ 의 이율보증기간은  $i_{k+1}$ 의 이율보증기간으로 한다.
- $i_{k+1}$  : 해지일이 속한 달에 회사에서 공시한 잔여보증기간보다 크거나 같은 공시이율  
 별 보증기간중 가장 가까운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공시이율
- $m$  :  $i_{k-1}$  이율보증기간부터  $i_{k+1}$  이율보증기간까지의 연단위 기간
- $m'$  :  $i_{k-1}$  이율보증기간부터 잔여보증기간까지의 월단위 기간(월미만 절상)

3. 해지되는 시점에 단위보험의 잔여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공시이율이 해당 단위보험 설정시의 공시이율보다 높을 경우 해지환급금은 시장가격조정률(MVA)을 적용하여 적립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.